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2
----------	-----

제출년월일 : 2003. 11. 27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급수장치의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의 취득전 발생한 의무사항인 체납요금 등에 대한 승계사항 및 체납금에 대한 증가산금 징수 항목을 정하여 수도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코자 함

2. 주요골자

- 공사비의 선납 및 신청 취소 관련 조항 수정.추가(안 제11조제1항,제2항)
- 공설공용에 대한 시설분담금 미 징수 조항 삭제(안 제12조제3항)
-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사항 추가(안 제22조제3항)
- 체납금에 대한 증가산금 징수 항목 신설(안 제33조제1·2항)
- 고성군수도급수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중 옥탕2종 삭제·수정(안 별표 2)
- 고성군수도급수조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중 옥탕용2종 삭제·수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27조

4. 입법예고 : 2003. 10. 14 ~ 2003. 11. 3 ▶ 특기할 사항 없음

5.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한다.

제33조 중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2중 옥탕1종란 내지 옥탕2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별		요금(원)	비고
구분	단계별		
옥탕용	1~200	700	
	201~300	800	
	301~500	920	
	501~600	1,160	
	601이상	1,430	

별표3중 옥탕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별	구분	구분내용
옥탕용	-	○ 목욕장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u>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u></p> <p>③~④ (생략)</p> <p>제12조(시설분담금) ①~②(생략)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 ----- ----- -----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u> -----</p> <p>② ----- ----- <u>신청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시설분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삭제</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33조(가산금) ① ----- ----- ----- ----- --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때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삭 제>			
【별표2】				【별표2】			
업 종 별		요금	비고	업 종 별		요금	비고
구분	단계별	(원)		구 분	단계별	(원)	
욕탕1종	0~200	700		욕탕용	1~200	700	
	201~300	800			201-300	800	
	301~500	920			301~500	920	
	501~600	1,160			501~600	1,160	
	601이상	1,430			601이상	1,430	
욕탕2종	0~200	1,200		<삭 제>			
	201~500	1,310					
	501~1,000	1,450					
	1,001이상	1,700					
【별표3】				【별표3】			
업종별	구분	구분내용		업종별	구분	구분내용	
욕탕용	1종	○일반목욕장업		욕탕용	-	○ 목욕장업	
	2종	○특수목욕장업 ○실질적으로 특수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